



의안번호	제 150 호
회의 연월일	2022. 12. 19. (제505회 정기회의)

심의
의결
사항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국)
제출연월일	2022. 12. 19.

범죄예방협력계장, 범죄예방정책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경비업의 허가요건 중 경비인력기준을 종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11월 1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경비업법 시행령상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시·도경찰청 관할구역에 소규모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관할구역에 소규모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비원 신입교육 실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비협회를 포함한 모든 민간 경비 교육기관은 경비원 신입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 심사를 거쳐 경찰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토의과제

없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별표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 칙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경비원”을 “일반경비원”으로,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단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관”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3.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6일부터, 별표 3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경비원 신입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실시하는 경비협회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경비업의 시설 등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1.시설경비업무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2.호송경비업무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 현금호송백 1개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3.신변보호업무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4.기계경비업무	·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관제시설	· 감지장치·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 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5.특수경비업무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비고

1.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무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 (제16조제1항관련)

1. 일반경비지도사

- 가.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한다.
- 나.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명씩 선임·배치하되, 200명을 초과하는 100명까지마다 1명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한다.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다.
- 다.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둘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2. 기계경비지도사

- 가.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한다.
- 나. 선임·배치기준은 제1호나목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공통

- 가.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고 있는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하는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하는 경비원의 수가 합산하여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전라남도경찰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것으로 본다.
- 나. 가목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감독·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는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의 수를 합산하여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경비지도사가 둘 이상의 경비업자에게 중복으로 선임·배치된 경우에도 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감독·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는 각 경비업자가 배치한 경비원의 수를 합산하여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2. (생략) 3.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 ⑤ (생략)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해야 -----.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 ----- 일반경비원 ----- ----- ----- 단체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3항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 -----

에 따라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1. (생략)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설> ② ~ ④ (생략)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해야 -----.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2. (현행 제1호와 같음) <삭제> 3.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3150 - 0950